

제 1 8 9 회 임 시 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1.29)

#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정옥]

<의안번호 제2013 - 8 호>

#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 1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 21

## 2. 제안이유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재난지수 100미만의 피해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제외규정을 두어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준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
  - 영 제8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 지원금을 지원함
- 다. 지원기준에 관하여 정함 (안 제5조)
  -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함

라. 지원제외에 관하여 정함 (안 제6조)

-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마.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

-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바. 재난지원금 지급, 반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6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제6조, 제8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확보(3천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라. 예고기간 : 2012. 12. 27. ~ 2013. 1. 17.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기여행 등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된 재난의 사유시설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며
  - **안 제5조**에서는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는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며
  - **안 제7조**에서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 및 피해조사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는 신고 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국가지원에서 제외된 사유시설및 재난지수 100 이상 300미만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산 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 조례안과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3.1.1] [법률 제11346호, 2012.2.22, 일부개정]

**제66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재난관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5.23]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10]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4.10]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영농·어업경영·산림경영·가축사육·염생산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상환 연

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용자 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 감면 등 간접 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4.10]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금액[농작물·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시·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군·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시·군·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전문개정 2012.4.10]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전문개정 2012.4.10]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군·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12.4.10]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 신고 :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판매 신고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4.10]